

# 조치원 한신더휴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 ■ 주요 청약신청 자격(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①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③ 청약신청 제한 : 조치원 한신더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2.09) 기준 당첨자(부적격 당첨자 포함), 계약자(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후 계약자 포함)는 신청 불가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신청 자격 및 입주자선정 방법’에 청약신청 자격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요 청약신청 자격만을 별도로 최상단에 안내함

###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조치원 한신더휴 무순위 청약자격, 청약신청 방법, 상품 안내, 제출 서류 등 분양 관련 사항은 조치원 한신더휴 홈페이지(<https://jcw-thehu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신청 및 무순위 당첨자 계약체결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체온 측정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 \* 입장 시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소독수 분사 등 감염 확산 예방조치에 불응할 경우
  -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 코로나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 의심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조치원 한신더휴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조치원 한신더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44-865-1650)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12.2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3.(금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696』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09.(금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696』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 신청전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종특별자치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여부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본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은 건본주택 현장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계약체결 등 주요일정

구분	청약신청일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일정	2023년 01월 13일(금) 오후 12:00 ~ 13:00	2022년 01월 13일(금) 오후 13:30	2022년 01월 13일(금) 오후 14:00 ~ 16:00	- 추첨은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및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건 원칙으로, 동일명의 2건이상 청약시 무효처리됩니다. (중복청약 불가) -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라도, 무작위추첨을 통해 대상 주택형별 청약 경쟁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방법	조치원 한신더휴 건본주택 방문 현장청약 접수	조치원 한신더휴 홈페이지 ( <a href="https://jcw-thehue.com/">https://jcw-thehue.com/</a> ) 개별조회	조치원 한신더휴 건본주택 방문 계약체결	
장소	조치원 한신더휴 건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새내로 112)	조치원 한신더휴 홈페이지 ( <a href="https://jcw-thehue.com/">https://jcw-thehue.com/</a> ) 당첨자 확인가능	조치원 한신더휴 건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새내로 112)	

- ※ 청약 접수 방법 : 구비서류 지참, 조치원 한신더휴 건본주택(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새내로 112) 현장청약 접수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 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2022.12.2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26-2,3,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2개동 총 256세대, 일반분양 190세대 중 59㎡ 타입, 65A㎡ 타입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민영주택	2022000696	01	059.8517	59	83 세대
		02	065.9990A	65A	41 세대

※ 공급가격 및 면적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신청 자격**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조치원 한신더휴(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조치원 한신더휴(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조치원 한신더휴(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당첨자 및 동·호수 선정은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및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당첨확인인 조치원 한신더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검색이 가능하며, 당첨자에게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 미달로 인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의거하여 사업주체 임의공급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당첨자 계약체결 [아래 모든 증명서류는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1.13.금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서류 미비시 계약서 수령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일시 : 2023.01.13.(금요일) 14:00 ~ 16: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무주택서약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주택소유확인	본인 및세대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출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대리 발급분 불가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정보 등 “전체포함” 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기록대조일은 당청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출입국기록출력 Y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 로 발급
	○		전자수입인지	본인	사본 사업주체 공급계약서 첨부필요(수입인지 세액 1억원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		계약금 입금증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건본주택에서는 현금 및 수표 수납 일체 불가함)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출입국기록출력 Y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정보 등 “전체포함” 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청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대리 발급분 불가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NH농협	301-0306-3644-71	한신공영(주) 교동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 세대수의 4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2023.01.13.(금요일) 14:30 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별 동·호수 선정하여 진행하며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2023.01.13.(금요일) 14:30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II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무순위 신청건수에 따라 무순위 2차 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무순위 청약 시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됨)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2.09)를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jcw-thehue.com/>)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46(B-401)	164771-0003492
시공	한신공영(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110111-0075683

■ 견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12 1층

■ 분양문의 : 044-865-1650

※ 본 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